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6-11-12

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

판 결

사 건	2025고정5 저작권법위반
피 고 인	1. A
	2. 주식회사 B
검 사	김동욱(기소), 박휘성(공판)
변 호 인	변호사 서안교 (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)
판 결 선 고	2026. 10. 21.

주 문

피고인들은 각 무죄.

이 유

1. 공소사실의 요지

가. 피고인 A

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C에서 네트워크장비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.

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. 7. 26.경부터 2024. 10. 11.경까지 위 회사 사무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6-11-12

실에서 D의 저작물인 E의 불법 복제물을 컴퓨터에 설치하고 이를 업무용으로 이용하였다.

나. 피고인 주식회사 B

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.

2. 판단

가.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

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(이하 '피고인 회사'라고 한다) 내 각 대상 컴퓨터에 이 사건 복제 프로그램이 설치된 경위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, 위 프로그램을 업무상 사용하지도 않았다. 직원들로부터 위 프로그램의 설치·사용 사실을 보고받은 적도 없다. 따라서 피고인 A이 직접 구 저작권법(2026. 2. 10. 법률 제2133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같다) 제12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침해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들을 처벌할 수는 없다.

나. 구체적 판단

1) 관련 법리

구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, 제124조 제1항 제3호는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 따라서 법인의 직원이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이를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하였을 뿐 법인의 대표자가 이를 직접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그 대표자가 위 법조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, 설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6-11-12

령 법인의 대표자가 직원이 그러한 복제물을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하는 것을 알고 방치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인 그 직원과의 공동정범 내지 방조범이 성립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, 직접 위 법조의 행위자로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(대법원 2011. 3. 10. 선고 2009도6256 판결 등 참조).

2) 이 사건에서 보건대,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, 즉 ① 피고인 회사 1층 CAM실 내 5대의 컴퓨터에 이 사건 복제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고, 해당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도면 파일 등이 저장되어 있거나 그 파일을 열어본 기록이 남아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는 점, ② 그런데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로서 회사 전체를 관리·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일 뿐, 기록상 피고인 A이 직접 위 프로그램을 해당 컴퓨터에 설치한 후 이를 업무상 이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, ③ 이 사건 법정에서 증언을 한 피고인 회사의 직원들은 자신들이 근무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이 사건 복제프로그램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누가 설치하였는지 모른다거나 언제 설치된 것인지 모르고, 본인들이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위 프로그램이 아니어서 이를 업무상 이용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,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복제 프로그램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후 이를 업무상 이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, 달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. 또한 피고인 회사 직원들이 이 사건 복제프로그램을 업무상 이용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긴 하나 설혹 피고인 A이, 피고인 회사 직원들이 이 사건 복제 프로그램을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하는 것을 알면서 이를 방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6-11-12

판례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을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침해행위의 행위자라고 볼 수 없다.

따라서 피고인 A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구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, 제124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의 단독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고, 양벌규정에 따라 피고인 A의 위 법률 위반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회사에 대한 처벌도 할 수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,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.

판사 조실 _____